

제27조제1항 중 “자전거에서”를 “자전거등에서”로, “자전거를 끌고”를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로, “자전거 운전자”를 “자전거등의 운전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자동차등에”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43조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5조 중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자동차등의”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전거를”을 “자전거등을”로 한다.

제49조제1항제5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동승자에게도”를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자전거의”를 각각 “자전거등의”로, “자전거를”을 각각 “자전거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80조제1항 단서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를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4조제1항제4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96조제1항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51조의2 중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3조제2항 중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4조제2호 및 제3호 중 “사람”을 각각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자전거를”을 각각 “자전거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된 최고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개선하여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소방차 등의 경우에도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초과속 운전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2조제19호의2 신설 등).

나.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함(제64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다.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 신설).

라.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153조제2항제2호 신설).

마.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154조제9호 신설).

<법제처 제공>